

미국의 2008년 PRO-IP법¹⁾의 입법배경과 주요내용의 소개

정보신청기관 : 법무연수원

I. 서론

형사처벌은 법집행의 공통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서만은 예외적이었다.²⁾ 1970년대에 세계화 및 기술의 발전이 저작권침해제품의 폭발적 증가를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상은 민사적인 제재에만 머물러 왔다.³⁾ 그러나, 미의회의 변화를 압박하는 산업분야의 로비와 더불어, 최근 20년간 형사법적으로 지적재산권 분야의 확장 및 처벌강화가 있어 왔다.⁴⁾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던 중에, 2008년 9월 26일에 미의회는, 미국의 산업에 있어서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을 위한 자원과 조직의 우선화에 관한 법률’(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08, 이하 “PRO-IP 법”이라 한다)을 통과시켰다.⁵⁾

PRO-IP법은 저작권과 상표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적 제재를 규정하는 새롭고도 통일적인 몰수



- 1) The 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08.
- 2) Grace Pyun, The 2008 Pro-IP Act: The Inadequacy Of The Property Paradigm in Crimi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Its Effect On Prosecutorial Boundaries, 19 DePaul J. Art, Tech. & Intell. Prop. L. 355, p. 355; 4 Jay Dratler Jr. & Stephen M. Mcjohn, Intellectual Property Law: Commercial, Creative, and Industrial Property §13.04(2008).
- 3) 4 Jay Dratler Jr. & Stephen M. Mcjohn, Intellectual Property Law: Commercial, Creative, and Industrial Property §13.04 (2008).
- 4) Ibid.
- 5) 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08, Pub. L. No. 110-403, 122 Stat. 4256.

및 압수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⁶⁾

그러나 위와 같은 조항들이 상표권법과 저작권법상의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과 권리를 불분명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은 개인이 두 법률 모두를 위반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있어서 그러하다.⁷⁾

상표권의 침해행위는 “등록된 상표와 같은 가짜상표 혹은 대체로 구별불가능한 상표가 상품에 부착된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⁸⁾ 또한 저작권법에 있어서, 상표권이 침해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 즉 동일한 상표 혹은 진품의 상표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⁹⁾

그러므로, 개인이 저작권과 상표권 모두를 침해하여 양자의 관련 형사범규를 위반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음반회사의 모조 상표를 부착한 음반을 불법복제하여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과 상표권 모두를 침해하는 것이다.¹⁰⁾

그러한 상표권과 저작권의 침해행위는 모두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의 형태이고, 광범위하게 “저작권, 특허권 혹은 상표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들을 권한 없이 그리고 불법적으로 생산 혹

은 배포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¹¹⁾

지적재산권의 형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상표권법 저작권법은 서로 다른 목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각각 다른 입법적인 배경과 정책적인 고려를 가지고 있다.¹²⁾ 지적재산권에 있어서 형사범죄를 통합하는 것이 이러한 역사적인 측면에서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PRO-IP법은 전통적으로 민사법적인 영역에 뿌리를 둔 법률 분야인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 연방정부에게 그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미정부당국은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것은 정부가 법률에 대한 사회의 표준적인 가치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적용범위를 확정하는 권한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¹³⁾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먼저 PRO-IP법의 제정에 있어서 그 찬반론을 비롯한 입법배경을 살펴보고, 그 후에 PRO-IP법의 주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6) Ibid.

7) Grace Pyun, supra note 1, p. 356.

8) 15 U.S.C. § 1127(2006).

9) 18 U.S.C. § 2318(2006).

10) Grace Pyun, supra note 1, pp. 356-357.

11) Black's Law Dictionary 1186(8th ed. 2004).

12) Grace Pyun, supra note 1, p. 357.

13) Ibid.

II. 입법과정 및 찬반론

PRO-IP법은 지적재산권법 분야에 있어서 역사적, 입법적, 행정적 발전의 정점에 있는 형사법적인 법률이다.¹⁴⁾ 또한 이 법률의 규정들은 형사법적인 지적재산권의 시행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오지는 않았지만,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의 개념을 경제적인 패러다임에서 형사법적인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¹⁵⁾

이하에서는 PRO-IP법의 입법과정과 그 과정에 있어서의 찬반론을 살펴본다.

1. 입법과정

미 상원의원인 Patrick Leahy는 모든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에 있어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PRO-IP법안을 2008년 7월 24일에 의회에 제출하였다.¹⁶⁾ 이 법안은 2007년 하원의원인 John

Conyers가 2007년 중에 제출한 법안을 통합하고 수정한 것이었다.¹⁷⁾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논쟁이 없었으나, 몇몇 반대 및 개정의견은 이 법안의 잠재적인 단점과 형사법적인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논점들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의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법안의 최초의 내용은 법무장관이 침해받은 당사자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¹⁸⁾ 2004년 Piracy법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던¹⁹⁾ Leahy 상원의원은, 그러한 조항의 목적은 형사적인 제재가 손해에 비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나,²⁰⁾ 모든 상원 및 하원 의원들은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더 큰 형사처벌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 찬성하였다.²¹⁾



14) Ibid.

15) Ibid.

16) 이 법안에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와 컴퓨터 관련 범죄도 포함되어 있었다. 154 Cong. Rec. S7280-01, S7280(daily ed. July 24, 2008) (statement of Sen. Leahy).

17) H.R. Rep. No. 110-617(2007).

18) S. 3325, 110th Cong. § 101 (2008) ("In lieu of a criminal action under section 506, the Attorney General may commence a civil action in the appropriat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against any person who engages in conduct constituting an offense under section 506.").

19) S. 2377, 108th Cong.(2006).

20) 154 Cong. Rec. S7280-01, S7281(daily ed. July 24, 2008) (statement of Sen. Leahy).

21) 154 Cong. Rec. H10229-02, H10236(daily ed. Sept. 16, 2008) (statements of Rep. Coble and Rep. Berman).

지적재산권 침해의 증가를 막을 수 있는 형사적인 제재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의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Leahy의원의 주장은 흥미로운 것이다.²²⁾

이 법안에 대한 반대는 드물었지만, 그로 인하여 저작권 및 특허권 침해 문제에 대한 형사 제재의 이용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원의원인 Chris Cannon과 Zoe Lofgren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규정이 과잉 적용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그것은 시민의 사생활과 그들의 사유물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상적이지 않은 권한행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즉 연방정부가 저작권이 보호된 노래를 다운로드할지도 모르는 학생의 가정용 컴퓨터와 같은 개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이 잠재적으로 허용된 것이기 때문이다.²³⁾

그러나 이와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한번 개정되고 2008년 9월 26일에 쉽게 양원을 모두 통과하였으며, 2008년 10월 13일에 공포되었다.²⁴⁾

2. PRO-IP법의 찬반론²⁵⁾

1) 찬성론

연방정부는 미국 업체가 복제된 물품의 판매로 인해 연간 2,500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추산하였다. 이 법의 찬성론자들은 이 법의 제정이 이 문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보았다. 이 법의 지지자들은 전 세계적인 상표위조 및 저작물 불법복제의 위협이 점점 증가하면서 이 법의 제정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고임금의 일자리 상실, 위조상품의 보건 및 안전상 위험, 그리고 위조에 대한 범죄조직단체의 관여를 제어하는 방안으로서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전미음반산업협회(RIAA), 전미 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미국상무부(U.S. Chamber of Commerce), 전미 제조업자 및 저작권 연합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and Copyright Alliance) 및 국제운송노동자조합(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 등은 이 법의 제정을 지지하였다.



22) 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08, Pub. L. No. 110-403, 122 Stat. 4256, 4279(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형사제재가 법무장관의 최우선권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의회의 견해이다).

23) 154 Cong. Rec. H10229-02, H10237(statements of Rep. Cannon and Rep. Lofgren).

24) 최종의결결과는 381 대 41이었다. <http://clerk.house.gov/evs/2008/roll664.xml>(2010. 3. 10).

25) 이하의 내용은 이규호, “미국 PRO-IP법의 제정을 바라보며”, 법률신문 2008년 12월 1일 제3702호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2) 비판론

공익단체 및 테크놀로지 기업 등은 이 법의 제정에 반대하였다. 이 법의 제정에 반대한 이들은 다음의 비판을 가한다.

첫째, 정부의 자원 및 납세자의 혈세를 낭비하는 입법이라고 비판한다. 즉 납세자의 혈세를 낭비하는 불필요한 연방기관을 창설하는 것이라는 주장한다.

둘째, 지적재산권집행협력관은 불법복제와 상표위조에 대응하는 연방법무부의 노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연방법무부는 이 법안이 상정되었을 때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창설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통령 직속의 연방지적재산권집행협력관은 쉽게 정치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한다.

셋째,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이용자가 침해 사실을 알면서 침해에 제공한 그 이용자의 설비를 압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적으로 음악을 다운로드하거나 새로 출시된 영화를 e-streaming 방식으로 보게 하는 이용자의 컴퓨터를 압수할 수 있게 된다. Washington D.C. 소재의 디지털권리 단체인 Public Knowledge의 회장인 Gigi B. Sohn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상업적으로 복제하는 자료부터 대량 침해에 사용되는 고비용의 제조설비를 압수하는 것은 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다운로드 사건에서 한 가정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압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넷째, 연방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공중의 권리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이나 PRO-IP법은 저작권자에게 보다 확대된 권리를 인정하면서 혁신이나 사용자의 권리에 대한 그 법의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아니한 법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Ⅲ. PRO-IP법의 주요내용

1. 구성

PRO-IP법은 다섯 title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title은 지적재산권의 민사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 title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형사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 title은 NIPLECC(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Enforcement Coordination Council)을 대신할 새로운 자문위원회를 창설하고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공동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네 번째 title은 지적재산권 범죄에 대항하기 위하여 지역의 법집행 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끝으로 다섯 번째 title은, 회계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게 미국 정부가 수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규정한다. 이것은 제조업자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들의 시행에 있어서 불필요한 재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

를 감독하기 위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각 부분에 관한 상세에 관하여 검토한다.

2. 주요내용

1) Title I

첫 번째 장은 민사적인 지적재산권법의 강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17 U.S.C. § 411상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보상규정을 개정한다. 17 U.S.C. § 411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저작권의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²⁶⁾

그 개정에 따르면 등록을 인증받기 위한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그렇게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등록을 충족하기 위해,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도 관계가 없다.²⁷⁾

즉, 부정확한 저작권 등록은 등록 자체를 무효로 만든다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항변은 법정손해배상의 가능성을 봉쇄하기 때문에 PRO-IP법은 저작권등록인이 그 등록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알고 저작권청장이 그 사실을 알았다더라면 등록을 거절하였을 경우에 한해 등록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하는 것이다.²⁸⁾

또한 PRO-IP법은 17 U.S.C. §411의 내용이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만 관계된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 있어서 등록요건은 불필요하다.²⁹⁾

둘째로, PRO-IP법은 17 U.S.C. § 503의 범위를 확장시킨다. 17 U.S.C. § 503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재화 물수를 규정하였었는데, 그것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복제품과 그 복제에 수단인 물건들의 압수와 침해에 사용된 모든 제



26) 17 U.S.C. § 411(a) (2006). Except for an action brought for a violation of the rights of the author under section 106A(a),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b), no civil action for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in any United States work shall be instituted until preregistration or registration of the copyright claim has been made in accordance with this title. In any case, however, where the deposit, application, and fee required for registration have been delivered to the Copyright Office in proper form and registration has been refused, the applicant is entitled to institute a civil action for infringement if notice thereof, with a copy of the complaint, is served on the Register of Copyrights. The Register may, at his or her option, become a party to the action with respect to the issue of registrability of the copyright claim by entering an appearance within sixty days after such service, but the Register's failure to become a party shall not deprive the court of jurisdiction to determine that issue.

27) 122 Stat. at 4257.

28) 이규호, 앞의 글, 'II. PRO-IP법의 주요내용'.

29) 17 U.S.C. § 411.

조, 판매 관련 문서와 영수증 등의 기록의 압수를 포함하는 것이다.³⁰⁾

셋째로, PRO-IP법은 미국상표법(Lanham Act) 중 법정손해와 사실상의 손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즉, 상표권 침해에 대한 3배 보상을 침해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파는 침해자에게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에게도 확대적용하고,³¹⁾ 최소 법정 손해와 최대 법정 손해를 두 배로 확장한 것이 그 내용이다.³²⁾ 마지막으로, PRO-IP법은 17 U.S.C. § 602³³⁾에 규정되어 있었던 사본이나 음반에 대한 침해의 정의를 수입의 경우뿐만 아니라 수출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³⁴⁾

2) Title II

PRO-IP법의 두 번째 장은, 지적재산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법적인 처벌을 강화한다. 첫째, PRO-IP법은 명시적으로 형사법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죄로 정하였는데, 이는 효율적으로 지적재산권의 경범죄를 배제하고 위반행위의 모호한 내용을 대체하는 것이다.³⁵⁾

나아가 PRO-IP법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재화를 거래한 결과로 발생하는 신체적인 상해와 사망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을 신설하였다. 즉, 의도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건을 거래하



30) 122 Stat. at 4258 (amending 17 U.S.C. § 503(a)(1) (2006)). (a)(1) At any time while an action under this title is pending, the court may order the impounding, on such terms as it may deem reasonable--

- (A) of all copies or phonorecords claimed to have been made or used in violation of the exclusive right of the copyright owner;
- (B) of all plates, molds, matrices, masters, tapes, film negatives, or other articles by means of which such copies of phonorecords may be reproduced; and
- (C) of records documenting the manufacture, sale, or receipt of things involved in any such violation, provided that any records seized under this subparagraph shall be taken into the custody of the court.

31) § 103, 122 Stat. at 4259 (amending 15 U.S.C. § 1117 (2006)).

32) § 104, 122 Stat. at 4259. 최저 법정 손해를 500불에서 1000불로, 최대 법정 손해를 10만 불에서 20만 불로 변경하였고, 고의적인 침해에 있어서는 법정 최대손해를 100만 불에서 200만 불로 변경하였다.

33) (a) Infringing importation or exportation.--

- (1) Importation.--Importation into the United States, without the authority of the owner of copyright under this title, of copies or phonorecords of a work that have been acquired outside the United States is an infringement of the exclusive right to distribute copies or phonorecords under section 106, actionable under section 501.
- (2)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infringing items.--Importation into the United States or exportation from the United States, without the authority of the owner of copyright under this title, of copies or phonorecords, the making of which either constituted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or which would have constituted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if this title had been applicable, is an infringement of the exclusive right to distribute copies or phonorecords under section 106, actionable under sections 501 and 506.

34) § 105, 122 Stat. at 4259-60.

35) § 208, 122 Stat. at 4263 (amending 17 U.S.C. § 506 (2006)).

면서, 고의적으로 혹은 부주의하게 심각한 신체상의 위해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의도가 있는 위반자는 벌금에 추가하여 최대 20년의 금고형을 받을 수 있다.³⁶⁾ 또한 같은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³⁷⁾

다음으로, 두 번째 장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몰수 및 압수절차를 정하고 있던 17 U.S.C. § 509의 내용을 폐기하였다. 대신 새로운 조항은 민·형사상의 몰수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³⁸⁾ 두 경우 모두,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건과 그러한 위반행위에 사용된 모든 재산을 몰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위반행위의 결과로 직·간접적으로 획득한 재산 또한 몰수할 수 있다.³⁹⁾ 그러나 민사상의 몰수와는 다르게, 형사상의 몰수는 개인의 유죄판결 이후의 재산만을 몰수할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재산의 파괴를 명령할 수도 있다.⁴⁰⁾

나아가, 새로운 조항은 위반행위를 한 자가 재산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¹⁾ 또한

PRO-IP법은 영화의 권한 없는 기록과 산업스파이방지법(Economic Espionage Act)이 보호하는 비밀을 거래하는 것을 포함하는 모든 지적재산권 관련범위를 위한 일률적인 보상 역시 규정하고 있다.⁴²⁾

3) Title III

세 번째 장은, 대통령 직속의 지적재산권 실행조정관 제도(IPEC,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를 신설함으로써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연방정부의 임무를 규정하였다. 실행 조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권고 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한다.⁴³⁾ 또한 세 번째 장은, 명시적으로 전미지적재산권법 집행조종위원회(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Enforcement Coordination Council, NIPLECC)를 폐지하고 있다.⁴⁴⁾ 이를 대신할 새로운 IPEC 권고위원회는 원래 NIPLECC에 포함되어 있던 기관과 부서의 대표를 포함하고 있다.⁴⁵⁾ 이러한 새로운 기구의 목적은 공동의



36) § 205, 122 Stat. at 4261(amending 18 U.S.C. § 2318 (2006)).

37) Ibid.

38) § 206, 122 Stat. at 4262-63(to be codified at 18 U.S.C. § 2323).

39) Ibid. at 4262.

40) Ibid.

41) Ibid.

42) §§ 201, 207, 122 Stat. at 4261-62.

43) § 301, 122 Stat. at 4265.

44) § 305(a)(1), 122 Stat. at 4270.

45) § 301(b)(3), 122 Stat. at 4266.

전략을 수립하는 것인데, 공동의 전략은 국내외의 지적권 침해 문제를 확인하고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해결책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⁴⁶⁾ IPEC은 공동의 전략을 제출하는데 있어 매년 진행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⁴⁷⁾ 이 보고서에는 IPEC이,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항하기 위하여 미연방정부가 다른 나라의 정부의 법률과 시행관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효율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발전시키고 그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⁴⁸⁾

4) Title IV

제4장은 법무부 내의 더욱 구체적인 변화를 규정하고 있다. 제4장은 법무부가 자격이 있는 주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적재산권 범죄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특별화된 교육을 제공하며, 연방과 주 사이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기소와 관련된 조사를 분석하고 정보를 공유하

기 위하여 2009년에서 2013년의 회계연도에 2,5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⁴⁹⁾ 또한 제4장은 법무부와 연방검찰청의 기구인 CHIP(Computer Hacking and Intellectual Property)와 CCIP(Computer 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에 특별한 인원을 추가함으로써, 형사적인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의 시행을 위한 조사와 변론의 자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⁵⁰⁾ 법무부 내에, 최소한 10명 이상의 특별 FBI요원들이 CCIP에 추가되고, 최소한 1명 이상의 특별 FBI요원과 적어도 2명의 특별 연방 검사보조자가 미연방검찰청의 CHIP에 추가된다.⁵¹⁾ 나아가 제4장은 FBI와 검찰총장이 연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조사, 체포, 기소 그리고 부과된 형벌의 수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것은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의 시행에 있어서 정부의 진행절차에 대한 연간평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⁵²⁾



46) § 301(b)(1), 122 Stat. at 4266.

47) § 304, 122 Stat. at 4266-67.

48) §§ 303(e)-(f), 304, 122 Stat. 4268-70. U.S. Gov't Accountability Office, Intellectual Property: Federal Enforcement Has Generally Increased, but Assessing Performance Could Strengthen Law Enforcement Efforts 7(2008), at app. V at 6. 이것은 수치상 목표의 일반적인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미법무부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다.

49) § 401(b)(1), 122 Stat. at 4271.

50) § 402(a), 122 Stat. at 4272.

51) Ibid.

52) § 404, 122 Stat. at 4274.

5) Title V

마지막 장인 제5장은, GAO(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가 미국의 제조산업과 전체 경제에 있어서의 수입 및 국내 상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의 영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어떻게 연방정부가 보다 제조업자들의 지적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³⁾ 연방정부는 지적재산권 관련법률의 시행을 위한 관계부처간의 접근을 시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GAO는 각각의 연방정부 기관간의 자료, 시설 그리고 재원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⁵⁴⁾

이진수

(외국법제 조사위원)



53) § 501, 122 Stat. at 4277.

54) § 502, 122 Stat. at 4278-79.